

퇴직급여 지급청구서 퇴직/몰수

확정기여형(DC) 기업형 IRP



[금융기관 결재용]

담당자	확인자

유안타증권 주식회사 (귀중)

해당사항에 체크

■ 퇴직자 기본정보

가입자명	(서명 또는 인)	입사일	
생년월일		퇴사일	
지급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IRP과세이연(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현물이전) <input type="checkbox"/> 몰수(회사반환)	최종중간정산일	
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금(IRP지급 예외사유 : <input type="checkbox"/> ①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<input type="checkbox"/> ③)	중간정산특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적용
잔여부담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원)	· 2012.12.31 이전 퇴직자는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, 2013.1.1 이후 퇴직자 중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가입자는 해당내용을 필수 기재합니다.	

- IRP과세이연 : 상품 매도 후 개인IRP 계좌로 지급(현물이전은 상품은 당사 개인IRP로만 지급 가능, 타사 원리금보장상품은 현물이전처리 불가)
- 몰수 :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 계좌로 반환
- 일시금(IRP지급 예외사유) : ① 퇴직시점 가입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②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하는 경우
- 잔여부담금 : 최종부담금 납입 이후 추가 납입해야하는 부담금이 있는 경우 작성
- 중간정산특례 적용시 중간정산금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(중간정산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각 제출)

■ 중간정산특례 미적용 동의서

중간정산특례 미적용에 따라 부담세액에 유/불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은 중간정산특례를 미적용함에 동의합니다.

가입자명 : (서명 또는 인)

■ 퇴직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계좌 정보

해당사항에 체크

퇴직/몰수	퇴직급여 지급 방법	지급계좌 정보		
	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예금주
퇴직	<input type="checkbox"/> IRP과세이연(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현물이전)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금 지급			
몰수	<input type="checkbox"/> 회사반환			

- 퇴직 : 근속연수 1년 이상자 퇴직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
 - IRP과세이연 : 퇴직소득세(주민세)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IRP계좌로 전액 지급
 - 일시금 지급 : 퇴직소득세(주민세)를 납부하고 전액 일시금 지급

상기 가입자의 퇴직(몰수) 사실을 증명하며, 본 신청서의 청구내용 및 지급계좌가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법인(단체)명 :

사용인감
또는
법인인감

추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(중간정산일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해당기간 전체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중간정산특례 적용가능) ● IRP과세이연 이전시 IRP 계좌 확인서 또는 IRP 계좌 통장사본 1부 ● 몰수 : 4대보험(국민연금/건강보험/고용보험/산재보험) 중 상실확인서 1부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재항목이 착오 또는 누락되었거나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무효입니다.